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58
----------	-----

2019. 7. 23.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07. 05. 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

나. 상정의결

- 제27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2019. 7. 19.)
“ 수정가결 ”

2. 제안이유(제안자: 안전교통국장 이 철)

- 행정안전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명칭변경(조례 전부변경)

- 1)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권의 명확화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의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나.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기준 변경(안 제4조)

- 1) 통합지원본부장을 부구청장으로 지정하고, 설치기준을 변경

다.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성(안 제7조)

- 1) 실무반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지원, 자원지원, 대민지원으로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하도록 함

라. 통합지원본부의 상황총괄반장 및 현장지휘관 지정(안 제9조)

- 1) 재난유형별 수습부서의 장을 상황총괄반장으로 임명하여 현장대응 및 수습·복구를 총괄하도록 지정함.
- 2)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해당지역의 동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하여 상황총괄반장의 지휘를 받거나 상황총괄반장의 임무를 대행

마.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신설(안 제21조)

- 1)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지원할 사항을 규정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상원)

- 안 조례 명칭과 개정안 본문부 등의 “통합지휘소”를 “통합지휘본부”로 하는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이하 “법”이라 함)의 개정(2014. 12.30)따른 사항임
- 안 제2조(정의)는 현행 조례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하였던 사항을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규정하였는 바, 현행 조례의 삭제 규정(현장지휘관,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현장책임자, 초기대응담당자)과 신설 규정(재난현장 수습·복구,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안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는 현행 조례의 단계(상황전파→현장출동→현장조치→긴급복구)를 조정(상황전파→현장출동→긴급구조 지원→수습·복구)한 바, 내용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안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는 통합지원본부장을 부구청장으로 하여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 하여야 하는 강행사항을 제1호부터 제5호까지(현행 조례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임) 규정한 바, 각 내용 설명이 필요해 보임. 또한, 현장지원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에 대하여 안 제9조와 연계 설명도 있어야 할 것임
- 안 제5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는 법²⁾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 협력이 용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6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등 통보)는 현행 조례 제8조를 이동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는 실무반을 편성하고, 이의 편제와 임무(안 [별표 1], [별표 2] 참조)를 상세하게 규정함에 따라 상황 발생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상세 설명이 필요함
- 안 제8조(업무연락관 파견)는 통합지원본부와 긴급구조본부 간에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료되며, 안 제9조(상황총괄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는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해당 지역의 동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는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³⁾의 재난유형별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긴급구조 현장지휘) ⑦ 시·군·구긴급구조통계단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규정한 바, 우리구의 매뉴얼 작성 현황(내용) 및 활용 등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임

또한, 안 제11조(재난지역 주민대피)는 현행 조례 제10조(재난지역 주민 대피)를 각 호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12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부터 안 제14조(재난현장의 출동지원)까지는 재난현장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동원, 정보 공유, 교통지원 등을 규정하여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수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한편, 안 제13조 중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의 규정은 문장 구성이 모호하다고 사료되는 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고 하는 수정 검토도 필요해 보임

- 안 제15조(긴급구조 지원)는 법⁴⁾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필요 인력

-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영)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제1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기준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 재난유형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조정·승인하고 지도·관리를 하여야 하며, 소관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승인하는 때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승인 결과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체계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난유형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의 표준화 2.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조치사항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3. 재난현장에서의 대응과 상호협력 절차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4.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개발 5. 그 밖에 위기관리에 관한 매뉴얼의 개선·보완에 필요한 사항
-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긴급구조 현장지휘) ⑦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협조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현장응급의료소 지원)는 현장응급의료소(보건소)의 장은 요청사항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긴급 구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 안 제17조(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는 긴급구조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력 및 장비 등의 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8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부터 안 제20조(재난현장 통신망 확보)까지는 재난현장의 상황파악, 통제, 통신망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기적 협력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항으로 사료됨
- 안 제21조(자원봉사활동 지원)는 통합지원본부에 자원봉사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에 대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새로 신설되는 조문으로 세부사항(구성, 활동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안 제23조(권한의 위임)는 대책본부장이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제1호~제10호)를 축소(제1호~제5호)한 바, 내용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이에 본 개정안은 대부분이 표준안을 기초로 작성되어 현행 조례를 보다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보완, 제출되었다고 사료되나 일부 수정은 필요해 보임.

또한, 전부개정안이 아닌 일부개정안으로 제출되어 개정지시문을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바, 표준안에 대한 개정안의 반영 사항(반영 여부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도 필요해 보임

아울러, 본 조례는 상당한 분량의 조문과 조항으로 구성되어 복잡하고, 조직도 다양하여 구민들이 조례의 구성과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사료되는 바, 주민들이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토론과정 중, 이향숙 의원으로부터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안 제 13조 중 “재난관리책임관에 대하여”를 “재난관리책임기관과”로,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을”을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에 대하여”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됨.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158호

발의일자 : 2019. 07. 19.

제안자 : 복지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일부 문구를 정리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모호한 문장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함(안 제13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3조 중 “재난관리책임관에 대하여”를 “재난관리책임기관과”로, “대응 상황 등을”을 “대응 상황 등에 대하여”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p> <p>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u>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u> 재난현장 <u>대응 상황 등을</u>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p>	<p>제1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p> <p>-----</p> <p>-- <u>재난관리책임기관과</u> -----</p> <p>-- <u>대응 상황 등에 대하여</u> -----</p> <p>-----.</p>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8
----------	-----

제출년월일 : 2019. 7. 5.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재난안전과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명칭변경(조례 전부변경)

- 1)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권의 명확화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나.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기준 변경(안 제4조)

- 1) 통합지원본부장을 부구청장으로 지정하고, 설치기준을 표준조례안에 따라 변
경

다.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성(안 제7조)

- 1) 실무반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지원, 자원지원, 대민지원으로 편성
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하도록 함

라. 통합지원본부의 상황총괄반장 및 현장지휘관 지정(안 제9조)

- 1) 재난유형별 수습부서의 장을 상황총괄반장으로 임명하여 현장대응 및 수습·복구를 총괄하도록 지정함.
- 2)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해당지역의 동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하여 상황총괄반장의 지휘를 받거나 상황총괄반장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마.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신설(안 제21조)

- 1)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하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지원할 사항을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변경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재난현장 수습·복구”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가 완료된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이

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통제 아래 이뤄지는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 지원, 환경 정비, 의료 지원, 시설 복구, 자원봉사단체 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5.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을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수습”으로, “호와 같이 단계별”을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상황전파 : 대책본부장이”를 “상황전파: 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에”로,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을 “전파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현장출동 :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를 “현장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긴급구조 지원: 긴급구조 단계에서 가동되는 긴급구조통제단의 현장지휘에 통합지원본부가 협력하는 단계

4. 수습·복구: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수습·복구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제2장의 제목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임명”을 “통합지원본부 설치·운

영 및 현장책임관 지정”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을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 시 「서울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사고 기본조례」 제21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구청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태풍, 홍수, 호우, 폭설, 해일,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2. 화재, 붕괴, 유류·유해화학물질 유출,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현장지휘소(소방) 또는 응급의료소가 설치될 경우
5.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강남구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④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제9조에 따른 현장지원반장 또는 현장책임관

이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 협력이 용이하며, 긴급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등 통보) ①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청 등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된 통합지원본부 운영계획
2. 수습·복구 체계로의 전환 시 인력·장비 재배치 현황 및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등 통합지원본부 운영 상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
3. 그 밖에 대책본부장 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 제목 “(현장지휘관 임명)”을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에 실무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지원, 자원지원, 대민

지원 등 별표 1 및 별표 2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제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편성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현장 실무반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결정하고 근무자를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

4. 재난현장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

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앞에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삭제한다.

제8조 앞에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를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통보)”를“(업무연락관 파견)”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본부에 통합지원 본부의 연락관을 파견하여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분석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복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재난현장 상황전파)”를“(상황총괄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현장을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상황총괄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황총괄반장을 지정하려는 경우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통합지원본부 각 실무반의 반장으로 임명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둘 이상일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사고비중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부서의 장을 상황총괄반장으로 임명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 재난안전과장을 상황총괄반장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실무반을 편성·운영한다.

제9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재난이 동에서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은 원활한 통합대응을 위하여 해당지역의 동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책임관은 상황총괄반장의 지휘를 받는다.
- ④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책임관으로 하여금 통합지원본부의 상황총괄반이 가동되기 전까지 상황총괄반장의 임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⑤ 상황총괄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통합지원본부장을 보좌하고 재난현장의 사고수습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의 제목“(재난지역 주민대피)”를“(재난현장 상황전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제1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파받은 재난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앞에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를 삽입한다.

제10조 앞에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삽입한다.

제11조 앞에 “제2절 재난현장 출동”을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재난지역 주민대피)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책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난방송 실시
2.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 발령

② 제1항에 따른 방송 또는 경보를 통하여 대피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따라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를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현장의 대응·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3조를 제14조로 하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의 제목 “(재난현장 출동지원 요청)”을 “(재난현장의 출동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통통제 등에 대한”을 “교통”으로 하며, 같

은 조 제2항 중 “의해”를 “따라”로, “없는 한,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를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로 한다.

제12조 앞에 “제2절 재난현장 출동”을 삽입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재난현장 조치”를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원”으로 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5조 및 제17조를 각각 제18조 및 제19조로 하며, 제15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긴급구조 지원)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수습·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수습·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중전의 제15조)제1항 중 “도착한”을 “동원된”으로,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을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통합지휘소의 장”을 각각 “통합지원본부장”으로, 같은 항 중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를 “대책본부장에게”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현장응급의료소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현장응급의료소(이하 “의료소”라 한다) 설치를 위하여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소의 장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은 부상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에 관하여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중전의 제17조)제1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통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통제”로, “없는 한,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를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로 한다.

제18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3장제4절의 제목 “재난현장 긴급복구”를 “재난현장 수습·복구체계 전환”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①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하여 재난

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법 제37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앞에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을 삭제한다.

제21조의 제목 “(복구체계로의 전환)”을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동원된 자원 및 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자원봉사 단체 또는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서의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과 자원·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3. 작업복 및 작업도구 등 그 밖에 재난현장에 필요한 사항 등

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요청받은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수습·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현장의 통합지휘가 필요없게 된 경우

제9조에 따른 현장책임관에게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한을 통합지휘소의 장”을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2. 제14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3. 제16조에 따른 의료소 지원 협조
4. 제19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제23조제5호 중 “제11조”를 “제20조”로, “출동 요청”을 “통신망 확보”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u></p>	<p><u>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을 수습·관리하는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 등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p> <p>2.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지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p> <p>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p>

말한다.

3.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재난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4. “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라 한다)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5. “현장책임자”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초기대응담당자”란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초동대처 등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재난현장 수습·복구”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가 완료된 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통제 아래 이뤄지는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 지원, 환경 정비, 의료 지원, 시설 복구, 자원봉사단체 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5.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 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현장조치 :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 긴급복구 : 대책본부장 및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

 -----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수습-----
 ----- 호
의 단계로 구분하여 -----
 -----.

1. 상황전파: 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에 -- 전파하는 -----
2. 현장출동: -----

 -
3. 긴급구조 지원: 긴급구조 단계에서 가동되는 긴급구조통제단의 현장지휘에 통합지원 본부가 협력하는 단계
4. 수습·복구: 재난현장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제2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임명

제4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발생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21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이 경우, 교통사고는 제외한다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수습·복구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제2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및 현장책임관 지정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 시 「서울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사고 기본조례」 제21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구청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 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5. 해상·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
6.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7. 홍수, 댐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신 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태풍, 홍수, 호우, 폭설, 해일,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2. 화재, 붕괴, 유류·유해화학

<신 설>

제5조(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 지휘소의 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통합지휘소는 재난현장 통합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

물질 유출,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현장지휘소(소방) 또는 응급 의료소가 설치될 경우

5. 그 밖에 사회적 과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강남구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④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제9조에 따른 현장지원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이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

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 협력이 용이하며, 긴급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
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
게 대처할수있는 통합대응체
계구축

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
협력체계 구축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
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
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
호품 확보·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등 재난현장 통
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
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휘소 내
에 종합상황반, 의료구호반, 응

급복구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④ 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시행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업무연락관 파견) 대책본부장은 통합지휘소와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휘소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계획 등 통보) ①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청 등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된 통합지원본부 운영계획
2. 수습·복구 체계로의 전환 시 인력·장비 재배치 현황 및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등 통합지원본부 운영 상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
3. 그 밖에 대책본부장 또는 통

제7조(현장지휘관 임명) ① 통합 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 재난관련 업무 담당 국·소장(국·소장이 없는 경우, 관련부서의 장)

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 :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국·소장(국·소장이 없는 경우, 소관 부서의 장)

<신 설>

합지원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에 실무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지원,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별표 1 및 별표 2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신 설>

따른 편성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현장 실무반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결정하고 근무자를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
4. 재난현장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
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8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통보)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휘소의 위치, 통합지휘소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휘소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신 설>

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삭 제>

<삭 제>

제8조(업무연락관 파견)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본부에 통합지원본부의 연락관을 파견하여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분석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복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9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9조(상황총괄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현장을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상황총괄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황총괄반장을 지정하려는 경우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반장으로 임명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둘 이상일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사고 비중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부서의 장을 상황총괄반장으로 임명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 재난안

전과장을 상황총괄반장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 본부장이 판단하여 실무반을 편성·운영한다.

<신 설>

③ 재난이 동에서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은 원활한 통합 대응을 위하여 해당지역의 동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책임관은 상황총괄반장의 지휘를 받는다.

<신 설>

④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책임관으로 하여금 통합지원본부의 상황총괄반이 가동되기 전까지 상황총괄반장의 임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⑤ 상황총괄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통합지원본부장을 보좌하고 재난현장의 사고수습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재난지역 주민대피)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을 요청하고, 민방위 경보를 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절 재난현장 출동

제11조(재난현장 출동 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파받은 재난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삭 제>

제11조(재난지역 주민대피) ① 통

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책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난방송 실시

2.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 발령

② 제1항에 따른 방송 또는 경보를 통하여 대피명령을 받은

제12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
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
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3조(재난현장 출동지원 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
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
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
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지원을 요청받

자는 즉시 따라야 한다.

제12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게 재난현장의 대응·수습에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
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원을 요청받
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
라야 한다.

제1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
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
다.

제2절 재난현장 출동

제14조(재난현장의 출동지원) ①

----- 교통 -----

② ----- 따라 -----

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절 재난현장 조치

<신 설>

제14조(통합지휘소의 위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휘소의 위치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

-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

-----.

제3절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원

제15조(긴급구조 지원)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삭 제>

제18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 동원된 -----
----- 법 제
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

형별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 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지휘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리 매뉴얼----- 통
합지원본부장-----
-----.

② 통합지원본부장-----
----- 대책
본부장에게 -----
-----.

제16조(현장응급의료소 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대응 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현장응급의료소(이하 “의료소”라 한다) 설치를 위하여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소의 장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은 부상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에 관하여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

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17조(수습·복구체계의로의 전환)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 현장 긴급구조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수습·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수습·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재난현장 통제)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

제19조(재난현장 통제) ① -----

----- 경우 -----
----- 통제 -----

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 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 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 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 설>

-.

② ----- 통제-----

-----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
-----.

<삭 제>

제4장 보칙

제4절 재난현장 긴급복구

제19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 복구) 통합지휘소의 장은 긴급 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0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 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제21조(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

제4절 재난현장

수습·복구체계 전환

<삭 제>

제20조(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①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하여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법 제37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제21조(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

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통합지휘소 철수)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

·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동원된 자원 및 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자원봉사 단체 또는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서의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과 자원·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3. 작업복 및 작업도구 등 그 밖에 재난현장에 필요한 사항 등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요청받은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수

우, 통합지휘소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제5조 제1항에 따른 통합지휘소 구성·운영
2. 제5조 제3항, 제4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
3. 제6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
4. 제10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
5. 제11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요청
6. 제13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요청
7. 제1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
8. 제18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

습·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현장의 통합지휘가 필요없게 된 경우 제9조에 따른 현장책임관에게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 -----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본부장-----
-----.

1. 제12조에 따른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2. 제14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3. 제16조에 따른 의료소 지원 협조
4. 제19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5. 제20조----- 통신망 확보
<삭 제>
- <삭 제>
- <삭 제>

동 지원 요청

9. 제20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
력 및 장비 지원 요청

<삭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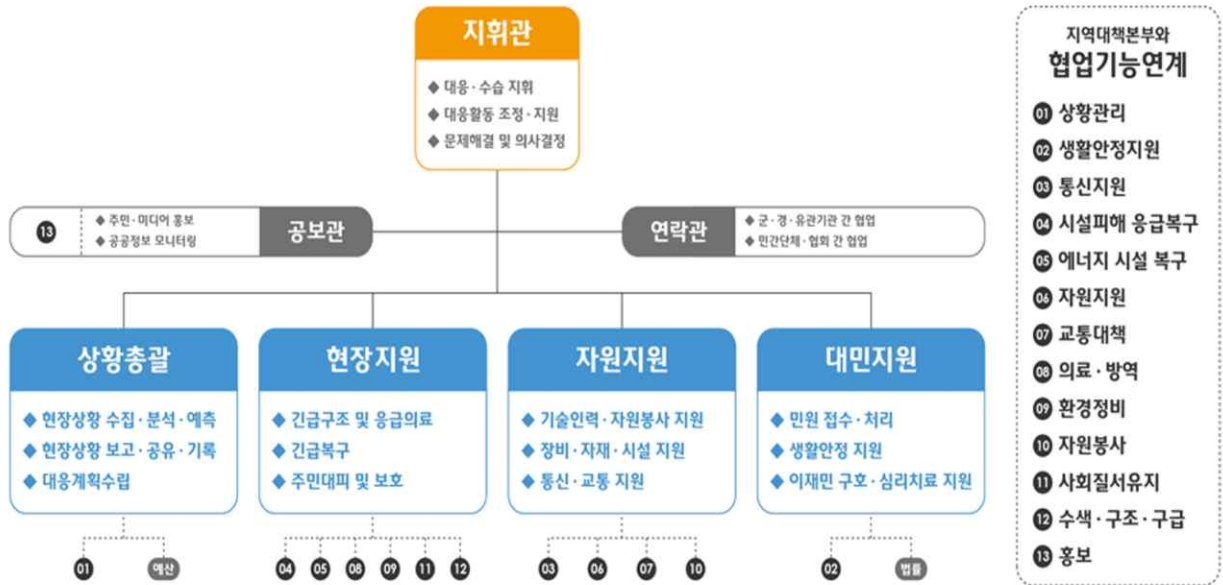
10. 제21조에 따른 복구체계로
의 전환

<삭 제>

[별표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 (제7조 관련)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



[별표 2]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제7조 관련)

구 분	주 요 임 무	부 서
통합지원본부장 (부 단 체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대응·수습 총괄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물자·인력 등을 지원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공 보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대응단체 정보공유 	정책홍보실
연 락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경·유관기관간 협업 민간단체·협회간 협업 	
상 황 총 괄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 상황정보 수집·분석·예측 현장 상황정보 보고·공유·기록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재난수습 주무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지원본부 운영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 상황보고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재난안전과
현 장 지 원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응급복구 	피해시설별 주무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복구(전기, 가스, 유류 등) 	환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보건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지원 및 근무인력지원 	총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정비 	청소행정과
자 원 지 원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통신지원 	전산정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지원(중장비 등) 	건설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대책(대중교통 우회조치 등) 	교통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주·정차 관리 	주차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봉사지원 	주민자치과
대 민 지 원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안정지원 이재민구호·심리지원 	복지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례지원 등 	어르신복지과